

- 바. 제2 동서 경제 회랑
- 사.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메콩 분지 개발 협력(AMBDC)
- 아. 싱가포르-쿠밍 철도 연결(SKRL) 사업. 그리고
- 자. 메콩강 분지 우선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메콩강 위원회와의 경험 공유

제 4 장 그 밖의 분야

제 4.1 조 새로운 분야로의 경제 동반자 관계 확대

포괄적인 대한민국-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,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데에 따라 당사국들이 상호 이해 관계를 가지는 새로운 분야로 경제 동반자 관계를 확대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한다.

제 5 장 최종조항

제 5.1 조 분쟁해결

1. 이 기본협정의 해석·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이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를 통하여 해결된다.

2.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2.2조제3항(서비스무역)·제2.3조제3항(투자)·제3장(경제협력)·제4장(그 밖의 분야) 및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이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